<bof>

1. [%1](#1 법인세 신고･납부)(#2 법인세 신고･납부)(#3 Corporate tax declaration and payment)[n]
   1. [%2](#1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법법§116))(#2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3 Receipt and retention of expenditure proof documents)[n]
      1. [1](#1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 대상금액)(#2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해야하는 대상금액)(#3 Amounts subject to receipt and retention of expenditure proof documents)[n]
         1. {1}(#1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초과(2003년 이전 10만원 이상, 2007년 이전 5만원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3 When a corporation receives goods or services from a business entity and the transaction amount exceeds KRW 30,000 per transaction, or when entertainment expenses incurred in a single event exceed KRW 30,000.){ r2<n>,r5<n>}
      2. [2](#1 지출증명서류 종류 및 보관의무 기간)(#2 지출증명서류 종류 및 보관의무 기간)(#3 Types of expenditure proof documents and their retention obligation period)[n]
         1. {1}(#1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이하 “정규 영수증”이라 함)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2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이하 “정규 영수증”이라 함)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3 After receiving credit card sales receipts, cash receipts, tax invoices, and invoi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gular receipts'), they must be retained for 5 years.){r1<n>,r5<n>}
      3. [3](#1 결손금 공제받는 법인의 지출서류 보관 의무)(#2 결손금을 공제받는 법인의 지출서류 보관 의무)(#3 Obligation to retain expenditure proof documents for corporations eligible for deduction of losses)[n]
         1. {1}(#1 5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함.)(#2 5년 이전의 사업연도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합니다.)(#3 A corporation seeking to deduct losses from business years within the previous 5 years in their respective income for each business year must retain the supporting documents for that year until one year after the declaration deadline of each business year for which the deduction was granted.){r1<n>,r2<n>}
      4. [4](#1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2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3 In case expenditure proof documents are not received)[n]
         1. {1}(#1 일반적인 재화･용역거래의 경우 그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하며 접대비의 경우 한도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2 일반적인 재화･용역거래의 경우 그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하며 접대비의 경우 한도와 관계없이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3 In the case of typical goods and services transactions, 2% of the transaction amount must be paid as surtax, and entertainment expenses cannot be treated as expenses regardless of the amount.){r1<n>,r2<n>}
      5. [5](#1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법법§116②, 법령§158③))(#2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3 Official receipts recognized as expenditure proof)[T,r1<n>,r2<n>]
         1.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직불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 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포함))(#2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3 =Sales slips such as credit card receipts){n}
         2. {2}(#1 =현금영수증)(#2 =현금영수증)(#3 =Cash receipts){n}
         3. {3}(#1 =부가가치세법§32에 따른 세금계산서)(#2 =세금계산서)(#3 =Tax invoices){n}
         4. {4}(#1 =법인세법§121 및 소득세법§163에 따른 계산서)(#2 =계산서)(#3 =Invoices){n}
         5. {5}(#1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2 =신용카드 등 월별 이용대금명세서)(#3 =Monthly statements of credit card and other usage fees){n}
         6. {6}(#1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 (국세기본법 시행령§65의7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2 =ERP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 등 거래정보)(#3 =Transaction information stored in ERP systems, including credit card transactions){n}
      6. [8](#1 정규영수증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출증명서류(통칙 116-158…1))(#2 정규영수증으로 보지 않는 지출증명서류)(#3 Expenditure proof documents not considered as regular receipts)[T,r1<n>,r2<n>]
         1. {1}(#1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2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3 =Tax invoices, invoices, and credit card sales slips issued under a different business entity's name than the actual business entity.){n}
         2. {2}(#1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2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물건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 받은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3 =Tax invoice or invoice issued after receiving goods or services from an unregistered business entity.){n}
         3. {3}(#1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2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3 =Tax invoice received after receiving goods or services from a simplified taxation taxpayer.){n}
      7. [9](#1 카드종류별 정규지출증명 인정여부)(#2 카드종류별 정규지출증명 인정여부)(#3 Recognition of regular expenditure proof by card type)[n]

{1}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n}

* + 1. [11](#1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2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3 Transactions exempt from the obligation to receive regular receipts)[n]
       1. [12](#1 사업자와의 거래)(#2 사업자와의 거래)(#3 Transactions with proprietors)[n]
          1. {1}(#1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2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물건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3 Corporations must receive and retain regular receipts except in cases specified by law when receiving goods or services and making payments for them from proprietors.){r1<n>,r2<n>}
       2. [13](#1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2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3 Transactions with non-proprietors)[n]
          1. {1}(#1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외의 지출액에 대하여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 하여도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명에 의하여 거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2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건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물건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외의 지출액에 대하여는 정규영수증을 받지 아니 하여도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명에 의하여 거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3 It is not necessary to receive regular receipts for goods or services received from non-proprietors or for expenses other than the supply price of goods or services. However, in such cases, the transaction must be proven by other evidence such as receipts, deposit slips, transaction statements, etc.) {r1<n>,r2<n>}
       3. [16](#1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예시)(#2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예시)(#3 Examples of transactions with non-proprietors)[T,r13<n>]
          1. {1}(#1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공급받는 경우)(#2 =폐업 사업자로부터 폐업 시 남은 물건을 공급받은 경우)(#3 =When receiving remaining assets from a closed proprietors upon their closure){n}
          2. {2}(#1 =법인이 종업원 개인 소유차량을 취득하는 경우)(#2 =법인이 종업원 개인의 소유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3 =When a corporation acquires a vehicle owned by an employee){n}
          3. {3}(#1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전기･수도요금 및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등)(#2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전기･수도요금 및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등)(#3 =Payment of electricity, water, and maintenance fees to apartment management offices, etc.){n}
       4. [17](#1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2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3 Transactions with non-proprietors)[n]
          1. [18](#1 사업자의 정의)(#2 사업자의 정의)(#3 Definition of a proprietor)[n]

{1}(#1 “사업자”라 함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2), 사업자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미등록 사업자)를 포함합니다.(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2 사업자는 영리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상 물건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자에는 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합니다.)(#3 A proprietor refers to a person who supplies goods or services in the course of business, regardless of whether it is for profit or not. Unregistered proprietors are also included in this definition.){r12<n>}

* + - * 1. [19](#1 사업자의 범위(법령§158①))(#2 사업자의 범위)(#3 Scope of a proprietor)[n]

[19x1](#1 법인사업자)(#2 법인사업자)(#3 Corporate proprietors)[n]

{1}(#1 영리내국법인(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비영리법인(수익 사업 부분에 한함),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2 금융･보험용역을 제외한 영리내국법인,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3 Domestic corporations, non-profit corporations, foreign corporations with domestic branches, excluding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r12<n>,r19x2<n>,r19x3<n>,r19x4<n>}

[19x2](#1 부가가치세법§3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2 부가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3 Proprietors under the Value Added Tax Act.)[T, r12<n>,r19x1<n>,r19x3<n>,r19x4<n>]

{1}(#1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2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물건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3 =A person who independently supplies goods or services in the course of business, regardless of whether the business purpose is for profit or non-profit.){n}

{2}(#1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제외)(#2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단,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제외됩니다.))(#3 =A simplified taxation taxpayer located in rural areas (excluding businesses that are not credit card merchants or cash receipt merchants.)){n}

[19x3](#1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2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3 Non-residents with income)[n]

{1}(#1 소득세법§1의2①(5)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119(3) 및 (5)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2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및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3 Proprietors under the Income Tax Act and non-residents with income){ r12<n>,r19x1<n>,r19x2<n>,r19x4<n>}

[19x4](#1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3 Non-residents with domestic business branches)[n]

{1}(#1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3 Non-residents with domestic business branches){ r12<n>,r19x1<n>,r19x2<n>,r19x4<n>}

* + - 1. [21](#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2 물건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3 Transactions not considered as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n]
         1. [22]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지 않는 거래)(#2 물건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지 않는 거래)(#3 Transactions not considered as consideration for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n]

{1}(#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지 않는 거래는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닙니다.)(#2 물건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지 않는 거래는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닙니다.)(#3 Transactions not considered as consideration for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are not subject to regular receipt issuance.){r12<n>,r13<n>}

* + - * 1. [23](#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예시)(#2 물건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지 않는 거래 예시)(#3 Examples of transactions not considered as consideration for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T,r22<n>]

{1}(#1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경상회비(법인 46012-956, 2000.4.17.))(#2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회비)(#3 =Membership fees paid to associations or unions){n}

{2}(#1 =판매장려금(법인 46012-3975, 1999.11.13.))(#2 =판매장려금)(#3 =Sales promotion fees){n}

{3}(#1 =회보발간 및 행사지원비(법인 46012-1338, 2000.6.9.))(#2 =화보발간 및 행사지원비)(#3 =Publishing and event support expenses){n}

{4}(#1 =상품권(법인 46012-2071, 2000.10.9.))(#2 =상품권)(#3 =Gift certificates){n}

{5}(#1 =지체상금(법인 46012-2008, 2000.9.29.))(#2 =지체상금)(#3 =Delayed payment penalties) {n}

{6}(#1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법인46012-296, 1999.1.23.))(#2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3 =Condolence payments to employees, etc.){n}

{7}(#1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를 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임.)(#2 =물건･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를 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입니다.)(#3 =Transactions where the consideration for receiving goods or services is paid under the designation of membership fees, etc., require the issuance of regular receipts.){n}

* + - 1. [24](#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2 물건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3 Transactions where regular receipt issuance as the consideration for supply of goods or services is exempted)[n]
         1. [25](#1 대금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정규영수증 수취를 면제하는 거래)(#2 대금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정규영수증 수취를 면제하는 거래)(#3 Transactions exempt from regular receipt issuance regardless of the payment method)[n]

{1}(#1 법령§158②에서 규정하는 거래와 법칙§79에서 규정하는 거래는 대금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정규영수증 수취를 면제합니다.)(#2 법에 규정하는 거래는 대금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정규영수증 수취를 면제합니다.)(#3 Transactions stipulated by law are exempt from regular receipt issuance regardless of the payment method.){r26<n>,r27<n>}

* + - * 1. [26](#1 법령§158②에서 규정하는 거래)(#2 법에서 규정하는 거래)(#3 Transactions stipulated by law)[T,r25<n>]

{1}(#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2007년 이전까지 5만원 이하))(#2 =공급받은 물건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3만원 이하인 경우)(#3 =When the per-transaction amount for received goods or services, including value-added tax, is KRW 30,000 or less.){n}

{2}(#1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 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함)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2 =농･어민으로부터 물건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3 =When directly receiving goods or services from farmers or fishermen.){n}

{3}(#1 =소득세법§127①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2 =법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3 =When receiving services subject to mandatory withholding tax from income earners designated as withholding agents by law.){n}

{4}(#1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화물료 징수용역을 공급받는 경우)(#2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화물료 징수용역을 공급받는 경우)(#3 =When receiving cargo handling services provided by a port authority.){n}

* + - * 1. [27](#1 법칙§79에서 규정하는 거래)(#2 법에서 규정하는 거래)(#3 Transactions stipulated by law)[T,r25<n>]

{1}(#1 =부가가치세법§10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2 =부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의해 물건을 공급받는 경우)(#3 =When receiving goods due to the transfer of a business that is not considered as the supply of goods under the Value Added Tax Act.){n}

{2}(#1 =부가가치세법§26①(8)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2 =부가세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3 =When receiving broadcasting services under the Value Added Tax Act.){n}

{3}(#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함))(#2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단,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부가통신역무를 제공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3 =When receiving telecommunications services from telecommunications operators. However, this excludes cases where a telecommunications sales operator receives value-added communication services from a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operator.){n}

{4}(#1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함))(#2 =국외에서 물건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단,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3 =When receiving goods or services from abroad. This excludes cases where the tax administrator issues a tax invoice or invoice.){n}

{5}(#1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2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물건을 공급받은 경우)(#3 =When receiving goods through auctions, public sales or government acquisition.){n}

{6}(#1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은 제외함) 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2 =법인이 아닌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3 =When receiving housing rental services from individuals who are not corporations, or when purchasing land or housing for residential rental businesses.){n}

{7}(#1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2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3 =When receiving taxi transportation services.){n}

{8}(#1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은 제외함))(#2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단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은 제외됩니다.))(#3 =When purchasing a building, and submitting a copy of the sales contract with confirmed transaction details as an attachment to the corporate income tax return to the head of the local tax office (including land but excluding houses)){n}

{9}(#1 =소득세법 시행령§208의2①(3)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2 =법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3 =When receiving financial or insurance services as stipulated by law.){n}

{10}(#1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2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3 =When receiving aircraft navigation services.){n}

{11}(#1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65①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2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가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3 =When receiving real estate lease services, and the lessee bears the value-added tax on the security deposit.){n}

{12}(#1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2 =물건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3 =When paying late interest due to payment delay of the agreed consideration under contracts for the supply of goods or provision of services.){n}

{13}(#1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2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3 =When receiving passenger transportation services for railways from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n}

{14}(#1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2008.1.1. 이후 지급분부터))(#2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3 =When using toll roads and paying tolls.){n}

{15}(#1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2 =물건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3 =Transactions where the payment for goods or services is made through a financial institution.){n}

* + - * 1. [27x1](#1 송금명세서 첨부하는 거래로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경우>])(#2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는 거래로서 신고서에 송금 사실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3 A transaction in which a remittance statement, which is a detailed document specifying the remittance details mentioned in the declaration, is attached and submitted)[T,e27-15<n>]

{1}(#1 =부가가치세법§61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2 =부가세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3 =When receiving real estate lease services from a proprietor subject to the Value Added Tax Act.){n}

{2}(#1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함))(#2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단, 법인과의 거래는 제외합니다.)(#3 =When receiving toll processing services. However, transactions with corporations are excluded.){n}

{3}(#1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61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함)가 제공하는 택시운송용역 외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2 =부가세법의 적용을 받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가 택시운송용역 외의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3 =When a person engaged in the transportation industry subject to the Value Added Tax Act receives transportation services other than taxi services.){n}

{4}(#1 =부가가치세법§61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0④ 각 호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2 =부가세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3 =When receiving recyclable waste materials, etc., from a proprietor subject to the Value Added Tax Act.){n}

{5}(#1 =부가가치세법§61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시행규칙 별표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열거)을 공급받은 경우)(#2 =부가세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은 경우)(#3 =When receiving recyclable resources from a proprietor subject to the Value Added Tax Act.){n}

{6}(#1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2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3 =When receiving commercial document delivery services under the Aviation Act.){n}

{7}(#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3 =When engaging in the business of a certified real estate agent and paying commissions to agents.){n}

{8}(#1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2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3 =When paying commissions to those who sell lottery tickets.){n}

{9}(#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2 =통신판매에 따라 물건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3 =When receiving goods or services through online sales.){n}

{10}(#1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2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3 =In other cases designa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n}

* + 1. [43](#1 경비 등의 지출증명서류 보관의무 면제(법령§158⑤))(#2 경비 등의 지출증명서류 보관의무 면제)(#3 Exemption from the obligation to retain expenditure proof)[n]
       1. [44] (#1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2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3 When receiving documentation for which the retention obligation is exempt)[n]
          1. {1}(#1 지출법인이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법§116①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2 지출법인이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3 If a corporation has received documentation for which the retention obligation is exempt, it may be regarded as having retained the proof without retention.){r45<n>,r2<n>}
       2. [45](#1 지출증명서류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증빙종류)(#2 지출증명서류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증빙종류)(#3 Types of proof documentation exempt from the obligation to retain proof of expenses)[T,e44<n>,r2<n>]
          1. {1}(#1 =조세특례제한법§126의3④에 따른 현금영수증)(#2 =법에 따른 현금영수증)(#3 =Cash receipts according to the law.){n}
          2. {2}(#1 =법인세법§116②(1)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2 =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3 =Credit card sales slips according to the law.){n}
          3. {3}(#1 =부가가치세법§32③, ⑤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2 =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3 =Electronic tax invoices sent to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s required by law.){n}
          4. {4}(#1 =소득세법§163⑧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2013.2.15. 이후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2 =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3 =Electronic tax invoices sent to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s required by law.){n}
    2. [46](#1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의무(법령§158⑥))(#2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의무)(#3 Obligation to prepare and retain expenditure proof documents)[n]
       1. [47](#1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의무 금액기준)(#2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및 보관의무 금액기준)(#3 Criteria for preparing and retaining expenditure proof documents)[n]
          1. {1}(#1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3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인세법§116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법령§158⑥).)(#2 법인의 직접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단, 사업연도가 1년미만 법인의 경우 30억원에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으로 법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합니다.)(#3 A corporation with an annual income of KRW 3 billion or more (or,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with a fiscal year of less than 1 year, the amount shall be calculated by multiplying KRW 30 billion by the number of fiscal months and dividing by 12) that receives expenditure proof documents according to the law must create and retain an expenditure proof document summary.) { r1<n>,r2<n>,r48<n>}
       2. [48](#1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의무 경과규정)(#2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및 보관의무 경과규정)(#3 Provisions regarding the preparation and retention of expenditure proof documents)[n]
          1. {1}(#1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는 20억원)(#2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는 20억원)(#3 For business years commencing between January 1, 2017, and December 31, 2020, the threshold amount is KRW 2 billion.){ r1<n>,r2<n>,r47<n>}
    3. [49](#1 지출증명서류 서식)(#2 지출증명서류 서식)(#3 Expenditure proof documents formats)[n]
       1. [50](#1 $(경비등의 송금명세서))(#2 $(경비등의 송금명세서))(#3 $(Remittance statements for expenses, etc))[n]

{1}텍스트, 번호, 영수증, 스크린샷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n}

* + - 1. [51](#1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작성방법))(#2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작성방법))(#3 $(How to prepare remittance statements for expenses))[n]

{1}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n}

* + 1. [52](#1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제재)(#2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제제)(#3 Penalties for non-receipt of regular receipts)[n]
       1. [53](#1 정규영수증 미수취 가산세)(#2 정규영수증 미수취 가산세)(#3 ㅖ Penalty tax for non-receipt of regular receipts)[n]
          1. {1}(#1 법인이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이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법법§75의5).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2 법인이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하는 물건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이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받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 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3 If a corporation receives supplies or services for which regular receipts must be issued but fails to receive them or receives documents that differ from the actual transaction, it must pay a penalty tax of 2% on the corresponding difference.){r54<n>,r55<n>}
       2. [54](#1 가산세 적용 제외 법인)(#2 가산세 적용 제외 법인)(#3 Corporations exempt from penalty tax)[T,r1<n>,r53<n>,r55<n>]
          1. {1}(#1 =국가･지방자치단체)(#2 =국가･지방자치단체)(#3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entities){n}
          2. {2}(#1 =비영리법인(법령§3①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2 =비영리법인(단,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됩니다.))(#3 =Non-profit corporations (except for profit-related activities)){n}
       3. [55](#1 가산세 적용방법)(#2 가산세 적용방법)(#3 Penalty tax calculation method)[n]
          1. {1}(#1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2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 비용처리하지 않은 접대비에 대해서는 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3 =The penalty tax is not applied to entertainment expenses that were not accounted as expenses due to the lack of regular receipts.){r53<n>,r65<n>}
          2. {2}(#1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기타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거래금액은 법인의 경비 등으로 인정됩니다.)(#2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기타 증명서류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거래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3 =Even when a penalty tax is imposed due to the non-receipt of regular receipts, if the transaction amount is confirmed by other documentary evidence, it is recognized as a corporation's expense.){ r53<n>}
       4. [56](#1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관련예규)(#2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관련예규)(#3 Regulations regarding the receipt and storage of expenditure proof documents)[n]
          1. [57](#1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거래의 정당함을 입증)(#2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거래의 정당함을 입증해야합니다)(#3 Corporations with tax obligations must prove the legitimacy of their transactions)[n]

{1}(#1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 하여야 하는 것임(법인세과-3981, 2008.12.15.))(#2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물건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해야합니다.)(#3 Corporations with tax obligations must demonstrate the legitimacy of all transactions based on objective evidence such as transaction records, payment regulations, internal rules, etc. Additionally, when receiving goods or services from proprietors subject to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and making payments for them, documentary evidence such as tax invoices must be received and retained.){n}

* + - * 1. [58](#1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 거래 입증 방법)(#2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 거래 입증 방법)(#3 Proof of transaction in cases where receiving a tax invoice is impossible)[n]

{1}(#1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3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132, 2020.10.26.))(#2 법인세법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 접대비 지출액 중 3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해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3 Proof documents corresponding to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must be received and retained. However, in cases where proof documents for expenses (excluding amounts exceeding KRW 30,000 for each entertainment expense) have not been received, if the payment can be confirmed by other objective evidence related to the business, it is recognized as a corporation's expense.){r1<n>}

* + - * 1. [59](#1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2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3 Receipt and retention of expenditure proof documents)[n]

{1}(#1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2019-법인-3970, 2020.4.29.))(#2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3 If a corporation has created all or part of its proof documents using the internet, these are considered originals. Storing them in an information storage device is deemed to fulfill the obligation of maintaining and retaining records.){r1<n>, r43<n>}

* + - * 1. [60](#1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별도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2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별도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3 Whether there is an obligation to keep separate records of credit card sales slips)[n]

{1}(#1 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0656, 2018.5.21.))(#2 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In the case of a domestic corporation receiving credit card sales slips, it may be deemed that the obligation to retain expenditure proof documents has been met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separate retention may not be required.){r1<n>,r43<n>}

* + - * 1. [61](#1 지출증명서류를 수취 및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2 지출증명서류를 수취 및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3 Whether there is an obligation to receive and retain expenditure proof documents)[n]

{1}(#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국내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서면-2018-법인-0659, 2018.3.30.))(#2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물건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국내업체로부터 편의상 물건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습니다.)(#3 When a domestic corporation, which pays the consideration to a foreign corporation for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and receives the consideration from the foreign corporation, receives part of the goods or services from a domestic entity that receives the consideration from the foreign corporation for convenience, it is considered as receiving it from the foreign corporation, and there is no obligation to receive and retain expenditure proof documents.){r1<n>,r19<n>}

* + - * 1. [62](#1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2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공급가액 입니다)(#3 The penalty tax amount due to non-receipt of regular receipts is based on the taxable amount excluding value-added tax)[n]

{1}(#1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이 없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도 가산세는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임(대법원-2017-두-58717, 2017.12.7.))(#2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이 없는 부가세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3 Imposing a penalty tax on value-added tax (VAT) unrelated to corporate income tax assessment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refore, the penalty tax due to non-receipt of regular receipts is assessed based on the taxable amount excluding VAT.){r1<n>}

* + 1. [63](#1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2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3 Obligation to receive regular receipts for entertainment expenses)[n]
       1. [64](#1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2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3 Obligation to receive regular receipts for entertainment expenses)[n]
          1. [65](#1 접대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 금액기준)(#2 접대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 금액기준)(#3 The monetary standard for the obligation to receive regular receipts for entertainment expenses)[n]

{1}(#1 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2 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하며 이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접대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3 If a corporation spends more than KRW 30,000 on entertainment expenses in a single event, it must receive a regular receipt, and if it does not, it cannot account the entertainment expenses as expenses for that event.){r1<n>,r66<n>}

* + - * 1. [66](#1 접대비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 금액기준 경과규정)(#2 접대비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 금액기준 경과규정)(#3 Provisions regarding monetary standard for the obligation to receive regular receipts for entertainment expenses)[T,r65<n>,r67<n>]

{1}(#1 =2007년 이전까지 5만원, 2008년까지 3만원, 2009년 이후 1만원 초과, 2021년 이후 3만원)(#2 =2007년 이전까지 5만원, 2008년까지 3만원, 2009년 이후 1만원 초과, 2021년 이후 3만원)(#3 =Until 2007, KRW 50,000; until 2008, KRW 30,000; from 2009, more than KRW 10,000; from 2021, more than KRW 30,000.){n}

{2}(#1 =20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으로 인상)(#2 =20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으로 인상)(#3 =For condolence expenses incurred after January 1, 2009, the limit is increased to KRW 200,000.){n}

* + - * 1. [67](#1 접대비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 예외규정)(#2 접대비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 예외규정)(#3 Exceptional rules for receiving regular receipts for entertainment expenses)[T,r65<n>,r66<n>]

{1}(#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명수취가 곤란한 일정 국외지역에서 지출하는 접대비는 증명수취의무의 예외를 인정(2006.1.1.부터))(#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명수취가 곤란한 일정 국외지역에서 지출하는 접대비는 증명수취의무 예외로 인정됩니다.)(#3 =Entertainment expenses incurred in certain overseas areas where it is difficult to obtain proof of payment, such as credit card sales slips, are recognized as exceptions to the obligation to obtain proof.){n}

{2}(#1 =2012.1.1.이후 최초 지출분부터는 농어민에 대한 지출도 증명수취의무 예외 인정)(#2 =2012.1.1.이후 최초 지출분부터는 농어민에 대한 지출도 증명수취의무 예외로 인정됩니다.)(#3 =Starting from January 1, 2012, the expenditure for farmers is also recognized as an exception to the obligation to obtain proof.) {n}

* + - 1. [68](#1 의무사용대상 제외 대상)(#2 의무사용대상 제외 대상)(#3 Exemptions from the mandatory usage requirement)[n]
         1. {1}(#1 접대비 지출액 중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법칙§20②)와 매출채권 임의포기금액에 대하여는 법법§25②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의무사용 대상에서 제외(재경부 법인46012-155, 2000.10.16.).)(#2 접대비 지출액 중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와 매출채권 임의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의무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3 Entertainment expenses incurred for products directly produced by the corporation and amounts of accounts receivable written off are exempted from mandatory usage of credit cards or other means as prescribed by law.){r65<n>}
      2. [69](#1 접대비 지출 시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2 접대비 지출 시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3 Use of corporate credit card for entertainment expenses)[n]
         1. {1}(#1 법인이 접대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법령§41⑥).)(#2 법인이 접대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야합니다.)(#3 When a corporation incurs entertainment expenses using a credit card, it must use a credit card issued in the name of the corporation.){r1<n>,r5<n>}
      3. [70](#1 법인 개별카드 사용)(#2 법인 개별카드 사용)(#3 Use of corporate individual cards)[n]
         1. {1}(#1 법인의 명의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법인 개별카드)의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봅니다(재경부 법인46012-150, 2000.10.12.).)(#2 법인과 법인의 직원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이 일차적으로 직원 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봅니다.)(#3 In cases where both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nd the name of an employee are listed and payment related to credit card usage is initially made from the employee's account but the corporation ultimately assumes responsibility, it is considered a "credit card issued in the name of the corporation."){r1<n>,r5<n>}
      4. [71](#1 위장가맹점 등으로부터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2 위장가맹점 등으로부터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3 Receipt of sales slips from shell merchants, etc)[T,r65<n>]
         1. [71x1](#1 위장가맹점 등으로부터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2 위장가맹점 등으로부터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3 Receipt of sales slips from shell merchants, etc.)[n]

{1}(#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가맹점과 다른 위장가맹점 등의 명의로 작성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합니다.)(#2 물건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가맹점과 다른 위장가맹점 등의 명의로 작성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3 When credit card sales slips issued in the name of a different shell merchant, etc., are received, it is not considered as entertainment expenses incurred using a credit card.){n}

* + - * 1. [71x2](#1 위장가맹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전표이란?)(#2 위장가맹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전표란?)(#3 What are sales slips received from shell merchants, etc.?)[n]

{1}(#1 매출전표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2 매출전표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물건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3 It refers to cases where the name and business location indicated on the sales slip differ from the name and business location of the credit card supplying goods or services.){n}

<boe>